의안번호	제 172 호
의 결	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5년 6월 1일

###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 172 호

제출연월일 : 2015년 6월 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기구신설 및 증원 등에 따른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도청을 찾는 민원인의 부족한 주차면수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학교이전으로 현재 폐교된 구)중앙초 부지 및 건물을 교육청에서 무상사용 중인 구)충북체고 부지와 교환하고
- 고부가가치 양식어종 연구와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보급으로 어 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양식분야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15.4.8)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내수면연구소 부지내에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을 신축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

≪구)중앙초 부지 및 건물 교환취득≫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 취득시기 : 2015. 7. ~ 2016. 6.

○ 취득규모 : 토지 13,525.7㎡, 건물 5,748.48㎡

○ 재산가액: 12,200백만원(토지 10,800, 건물 1,400) \*추정감정가

○ 취득사유 : 부족한 청사공간 및 주차부지 확보

####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 위 치 : 충주시 용탄동 118-1

○ 사업기간 : 2015. 7. ~ 2016. 12.

○ 사 업 량 :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1동(지상1층, 건축면적 1,200㎡)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 재산의 처분

### ≪구)충북체고 부지 교환처분≫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808-4번지

○ 처분시기 : 2015. 7. ~ 2016. 6.

○ 처분규모 : 토지 7,613 m²(전체 11,857 m² 중 64%)

○ 재산가액: 3,800백만원 \*추정감정가

○ 처분사유 : 도 교육청 소유의 구)중앙초와 교환

### 3.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 2015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bigcirc$	외견	11 6	근 '	반외계						(단위 : 건	, Ⅲ, 센턴)	
구		분	당 초			변 경				합계		
			건수	면 적	그 액	건수	면 적	그 액	건수	면 적	금 액	
		토지	1	63,391.5	9,913,163	1	13,525.7	10,800,000	2	76,917.2	20,713,163	
	계	건물	2	12,400.0	30,000,000	2	6,948.4	3,400,000	4	19,348.4	33,400,000	
		기타										
취	대 대	토지	1	63,391.5	9,913,163				1	63,391.5	9,913,163	
	비 입	건물										
		기타										
	교	토지				1	13,525.7	10,800,000	1	13,525.7	10,800,000	
	환	건물				1	5,748.4	1,400,000	1	5,748.4	1,400,000	
득	긴	기타										
	  기	토지										
	기 타	건물	2	12,400.0	30,000,000	1	1,200.0	2,000,000	3	13,600.0	32,000,000	
		기타										
	계	토지	1	6,467.5	1,011,388	1	7,613.0	3,800,000	2	14,080.5	4,811,388	
		건물										
		기타										
	픕	토지	1	6,467.5	1,011,388				1	6,467.5	1,011,388	
-1	<sup>11</sup>   각	건물										
처	7	기타										
	· 양 려	토지										
		건물										
	'	기타										
분	교 환	토지				1	7,613.0	3,800,000	1	7,613.0	3,800,000	
		건물										
		기타										
	   기	토지										
	기 타	건물										
	7	기타										

#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b>4)</b> = 1								
일련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번호	지목	소 재 지	면 적		시기	, , , ,	선소유자	,
	토지							
계 .	건물	1건	1,200	2,000,000				
	기타							
	토지							
1	건물	충주시 용탄동 118-1	1,200	2,000,000	2018.8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건립	-	신축
	기타							
	토지		0	하	여	백		
2	건물							
	기타							
	토지							
3	건물							
	기타							
	토지							
4	건물							
	기타							
	토지							
5	건물							
	기타							

# 2015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14-3)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 기계 6 · 현단기계 (단계 · m, 전단)												
일런 번호		재 산 표 시					교환대상	추 정	교환	교 환	교 환	nj –
		구분	지목	소	. 재 지	면적	면 적	가 액	시기	사 유	대상자	비고
계	토	취득			1건	13,525.7	13,525.7	10,800,000				
	지	처분			1건	7,613.0	7,613.0	3,800,000				
	건	취득			1건	5,748.4	5,748.4	1,400,000				
	물	처분										
	7]	취득										
	타	처분										
1		취득	학교	청주시 문화동	상당구 4	13,525.7(토지), 5,748.4(건물)		12,200,000	'15.7 ~'16.6	공유재산 활용도제고	충청북도 교 육 감	
		처분	체육	청주시 사직동		7,613(토지)	7,613(토지)	3,800,000	'15.7 ~'16.6	"	충청북도	
2		취득				०]	하	여	백			
		처분										
	3	취득										
		처분										

#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 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 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 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 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